R&D

KIOSK

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길잡이

제83호 2021년 4월

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, 실패 용어 폐지 등

사롭게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둘러보기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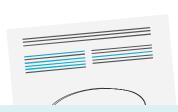
차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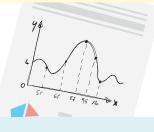
소개····		 	 2
	은 ••••• 발 과제평가		3
한걸음 더 유형별 평가	'		 6

R&D KIOS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료로 배포합니다.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. KIOSK에 사용된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재가공하실 수 없습니다. 기획·발행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조사 · 편집 · 디자인: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TEL: 02-6215-1222 FAX: 02-6215-1221 www.koworc.kr info@koworc.kr

소개

2021년 2월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'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표준지침 개정안'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 개발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등 R&D 법·제도의 변화를 담아 정비되었습니다. 향후 정부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·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







'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'이란?

부처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,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'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'의 목적은?

-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지침 표준화 및 평가의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전 부처 과제평가의 전문성·공정성 제고
- 질적 지표 활용 및 정성평가 확대 등 사업평가의 정책 방향을 과제평가 수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제고
- 연구개발과제의 적정한 기획관리 비용 확보 및 연구자 평가 부담 완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





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내용

앞으로 연구개발 과제평가에서는 논문·특허와 같은 <mark>일률적인 성과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</mark>하게 됩니다. 또한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<mark>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</mark>하였습니다. 더불어 '실패'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였습니다.

최종평가

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중심으로 평가자료 간소화

논문·특허 등 일률적인 성과목표·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합니다.

기본방향

• 과제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연구개발 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하여 평가

평가정보를 판단에 기빈

沙。

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를 확대합니다.

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자율성 · 책임성이 강화됩니다

•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로

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. 핵심적 연구내용

•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,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

과제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강화됩니다.

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환류, 평가결과 등의 공개를 확대하여,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강화

Hot Issue

단계평가

추적조사

선정평가

• 선정평가 평가자료가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되고,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상한 기준이 사전에 제시됩니다. 평가에 앞서 검토합니다.

•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의 참여

제한 해당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선정

유리 및 불리한 대우 적용 원칙과 사례가 제시됩니다.

- (유리한 대우) 사업·과제 특성에 따라 우대 사유를 설정하고, 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유리한 대우 적용례를 표준지침에 제시)
- (불리한 대우)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만 불리한 대우 적용 가능

□ 단계 및 최종평가

다양한 중간평가가 폐지되고 단계평가만 시행됩니다.

- (기존) 연차평가, 중간 모니터링, 단계평가,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중간평가 형태 규정으로 연구자의 평가·행정 부담 가중
- (개정)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,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, 목표변경, 연구비 증감, 인센티브 지원 등 조치

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.

- (기존) 중간·최종평가에서 성과의 활용 계획· 실적에 대해 평가
- (개정) 단계·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,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

'실패' 용어가 폐지되고 평가가 일원화됩니다.

- (기존) 평가결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 제재, 예외적 감면으로 규정
- (개정) '실패'용어 폐지하고, 단계·최종평가 시성실수행여부까지 판단하여 평가결과 '극히 불량'한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가능

부처마다 상이한 평가 등급이 표준화 됩니다.

- (기존) 13개 이상의 평가등급 운영 (우수/보통/성실수행/불성실수행, S/A/B/C/D, 혁신성과/ 보통/성실수행/불성실수행, 성공/실패, 완료/미완료 등)
- (개정)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-보통-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의 등급 부여

R&D Kiosk 제83호 2021년 4월



5





추적조사

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는 폐지되고,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추적조사가 가능해집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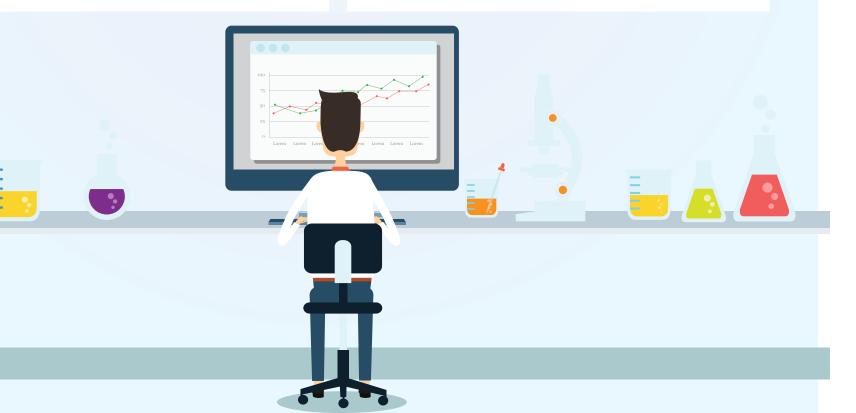
평가의 전문성 확보 강화

평가위원 후보단 발굴이 강화됩니다.

-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한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및 활용
- 대규모 과제, 사업단 과제 등 국가 R&D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을 권고

평가위원 제척기준이 완화됩니다.

-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준을 적용
-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제의 내용,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에 포함 가능



한걸음 더

유형별 평가의 기본방향 및 특징

앞으로 연구개발과제는 창의·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'창의도전형' 유형과 목표 달성도 중심의 정량 평가를 실시하는 '성과창출형' 유형으로 구분되며 평가체계도 차별화됩니다.

유형별 평가 기본방향



창의도전 유형

- 엄정한 선정평가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
- 연구자가 창의적·도전적인 연구에 몰입·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-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인 심층 평가결과가 차기 연구과제 선정 시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
-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,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성과창출 유형

- 연구목표달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
-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으로 컨설팅 실시
- 목표달성도,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최종평가 및 조기 종료

유형별 평가의 특징

유형		창의도전형	성과창출형	
평가기준		· · 과정 존중	• 성과 중심	
대상과제		- - - • 소관부처가 지정	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	
주요 내용 :	선정평가	• 연구자역량 및 창의·도전성을 심층 검토	기술적 명확성,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 목표달성·성과창출 가능성 중심	
	단계평가		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	
	최종평가	• 정성평가(연구성과·의의 의견제시)	목표달성도등급 평가(정량평가)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 중심	
기타 (성과확보방안)		•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 결과 연계	과제의 조기종료 확대추적조사 강화	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2021), "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(안)"

